



제420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이수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5479호)

2025. 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	2

I. 개요

1.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5479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이수진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1. 12.
- (3) 회 부 일 : 2024. 11. 13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·증가하고 있음.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·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,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'5년'에서 '3년'으로 단축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·시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의3 제1항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☐ 개정안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 - -----3년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※ 시행일: 공포 후 6개월	

나. 검토의견

- ☐ 현행법상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,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거쳐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짐¹⁾.

1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해당 기본계획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, 관계 기관·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²⁾,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마약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.
- 그런데 마약류 범죄는 그 전과 속도가 빠르고 범죄의 수법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며 신종 마약류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향후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마약류 관련 대책을 빠르게 재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.
- 다만,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기보다는 신종 마약류 출현 및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마약류 관련 정책은 시행된 이후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주기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, 신종 마약류 출현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

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3.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·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부처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다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

□ (식품의약품안전처)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.

- 다만, 마약류 대응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, 현행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□ (국무조정실)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 마약류 수사·단속, 치료·재활, 교육·홍보 등의 정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고, 신종 마약 출현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마약류에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04